

1 구조·구급대원 특별건강관리 (병원진료비 자기부담금 지원관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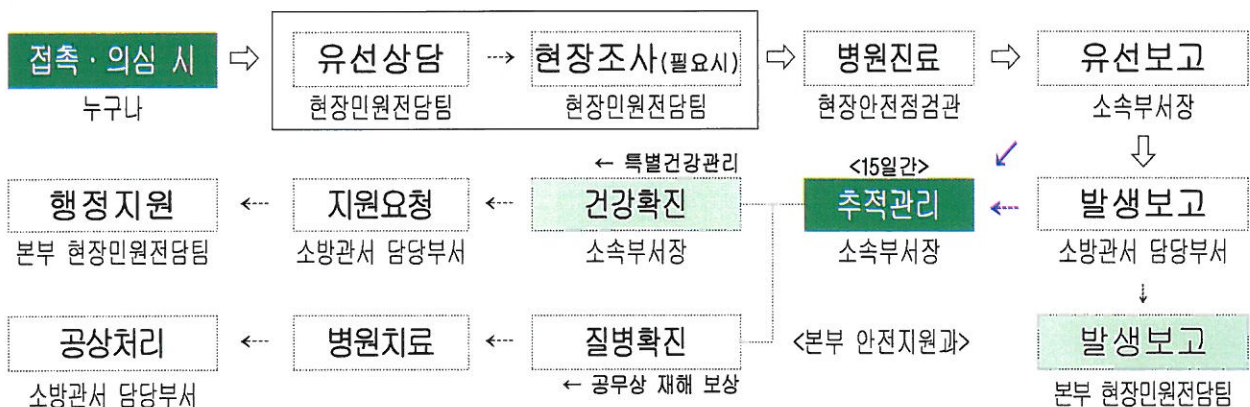
- ❖ 재난사고 현장에서 유해물질, 생물·감염체 접촉이 불가피한 119대원
- ❖ 상해로 인한 병원진료, 개인위생 등 자기부담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

□ 추진배경

-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법률」 시행령 제26조, 제27조(건강관리대책)
-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4조(보건안전관리규정)

□ 추진계획

- 추진기간 : 연중 수시 / 현장출동대원
- 지원대상
 - 재난사고 현장에서 오염물질 및 감염환자 접촉한 구조구급대원
 - 신체부상으로 공무상재해 등 병원진료비를 자기 부담한 구조구급대원
- 업무처리
 - 처리흐름 : 발생보고(구조구급대원) → 확인·청구(현장민원전담팀) → 지원·관리(본부)
- 병원진료 특별건강관리 업무흐름도



□ 추진일정

추진내용	추진일정			
	1/4	2/4	3/4	4/4
기본계획				
특별 건강관리				

2 구조·구급대원 배상책임관리 (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지원관리)

- ❖ 재난현장 인명구조 등 긴급조치에 대한 제3자 법률상 피해발생 불가피
- ❖ 119대원의 재난현장 부주의, 과실로 인한 피해책임 보상지원 제도정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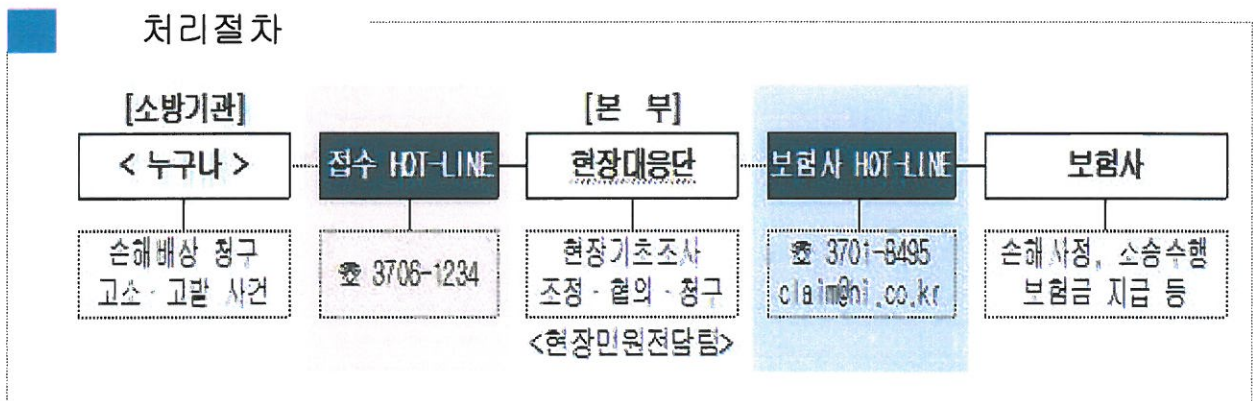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배경

-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법률」 제15조(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)
-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법률」 시행령 제22조(손실보상)

□ 추진계획

- 추진기간 : 연중 수시 / 현장출동대원
- 주 관 : 본부 현장대응단(현장민원전담팀)
- 지원대상 : 화재진압, 구조, 구급, 생활안전 등 모든 현장활동대원
- 업무처리 : 발생보고(부서장) → 확인·청구(소방서) → 지원·관리(본부)

□ 처리절차



□ 추진일정

추진내용	추진일정			
	1/4	2/4	3/4	4/4
기본계획	■			
특별 건강관리	■	■	■	■

3 구조·구급대원 유해물질노출 등 감염관리

- ❖ 특수구조단, 소방서 119구조·구급대원의 재난유형별 호흡 및 신체보호용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및 정기적 건강관리대책 추진하고자 함

□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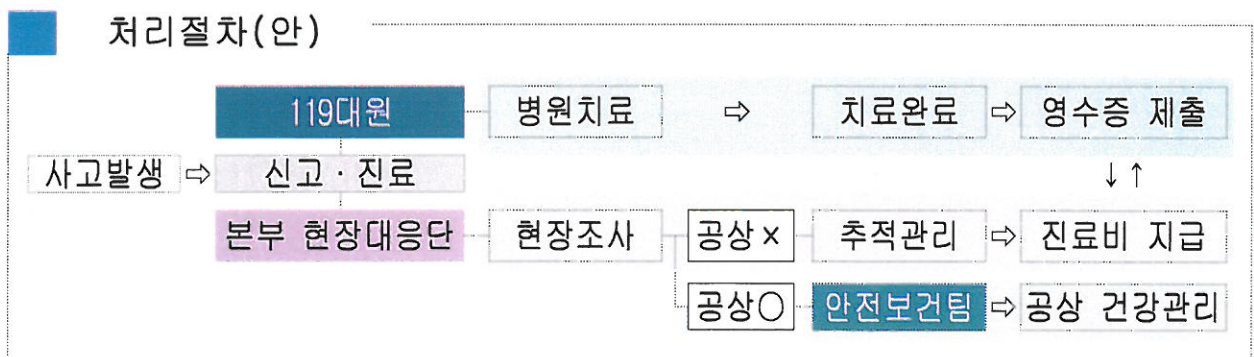
-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6조(감염방지대책)
-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4조(보건안전관리규정)

□ 추진계획

- 감염방지위원회 설치·운영 및 감염방지 업무책임자 지정
- 구조·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방지 교육 및 정기 건강검진 추진
- 감염방지사설을 이용한 유해, 감염·생물체 오염 구조·구급대원 위생관리
- 재난유형별 구조·구급대원의 호흡 및 신체보호장비(PPE) 착용기준 확행
- 유해물질, 감염·생물체 접촉에 대한 구조·구급대원 감염방지 지속관리

□ 처리절차

- 사고신고 : 즉시 또는 노출·접촉사실 인지후 48시간 내 → 소방서 안전계획→본부
 ☞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현장조사 후 공상여부 판단 추적관리 또는 공상요청



□ 추진일정

추진내용	추진일정			
	1/4	2/4	3/4	4/4
구조·구급대원 감염방지 교육(월 1회)	[진행 중]			
구조·구급대원 정기 건강검진(연 2회)		[진행 중]		[진행 중]